

## 7. 감사의견서

농협법 제71조 제1항(결산보고서의 제출, 비치와 총회 승인) 및 동구미농협  
정관 제139조 제1항(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)에 의하여 2024년 1월17일  
조합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사업보고서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 
잉여금처분(안)의 각 조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  
함을 인정합니다.

2024년 01월 18일

동구미농업협동조합

감 사 지종부 (인)

감 사 오일식 (인)

